

# 보도자료

2016. 9. 5.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구민경 (☎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양형위원회는 2016. 9. 5.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1.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내용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기본영역 상한을 1년 4월에서 1년 6월로 상향
  - 기본영역에서 1년 6월을 선고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양형실무례를 반영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유형의 가중영역의 상한을 6년에서 7년으로 상향
  - 행위불법, 결과불법이 매우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중영역의 상한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함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수정하여 특별감경인자를 추가하여 형을 감경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추가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함
- 특별가중인자인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
- 만취상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범죄, 성범죄 등에 규정된 **서술식 양형기준**을 추가함
-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이라는 일반가중인자의 정의에 포함시킴(일반가중인자는 형량범위에 있어서 감경, 기본, 가중의 세 영역 간의 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고형 결정에만 참고하는 양형인자라는 점에서 특별가중인자와는 구별됨)
- ①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주관적 표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②'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로 객관적인 표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혹시라도 위축될 소지를 차단함
-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없음

## ② 향후 일정

- 2016. 10. 21.(금) 16:00 제7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하반기 설정범죄군 검토
- 2016. 9. 15.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 I.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현행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은 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 후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공소제기 기준 및 선고형량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함

## [구체적 수정 내용]

### ■ 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상한을 '1년6월'로 상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6월	1년 - 4년

- 기존 선고형 분포 ⇨ 기본영역에서 1년6월을 선고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
-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동일한 범죄군의 기본영역 상한과의 균형을 감안함(사행성·게임물범죄, 마약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가중영역의 상한을 '7년'으로 상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7년

- 가중영역의 상한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위불법, 결과불법이 매우 큰 사안에 있어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양형인자

○ 대유형 1.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로 수정

○ 특별가중인자인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대비되는 특별감경인자 필요

○ 결과불법이 경미한 경우를 양형에 반영함

○ 대유형 1~3 특별감경인자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삭제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로 수정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특별감경인자) ⇨ 적용사례가 매우 적었음(공무집행이 부적법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수정하여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준하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함

○ 특별가중인자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신설하는 것과의 균형을 아울러 고려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대유형 1~3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대유형 1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정의 규정 추가(밑줄 친 부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

- 만취상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범죄, 성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등에 규정된 서술식 양형기준을 반영함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대유형 1~3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양형인자의 정의에 추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이라는 일반가중인자의 정의에 포함시킴(일반가중인자는 형량범위에 있어서 감경, 기본, 가중의 세 영역 간의 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고형 결정에만 참고하는 양형인자라는 점에서 특별가중인자와는 구별됨)
- ①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주관적 표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②‘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로 객관적인 표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혹시라도 위축될 소지를 차단함
-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없음

## ■ 집행유예 기준

-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에 대응하여 이를 집행유예기준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도 아울러 규정하고, 주요참작사유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삭제함

## ■ 수정된 양형인자표

### ○ 공무집행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협박·위계의 정도 또는 <u>공무방해의 정도</u>가 경미한 경우</li> <li>○ <u>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u></li> <li>○ <u>참작할 만한 범행동기</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비난할 만한 범행동기</u></li> <li>○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li> <li>○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li> <li>○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li> <li>○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범행</li> <li>○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과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공용물무효·파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li> <li>○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li> <li>○ <u>참작할 만한 범행동기</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비난할 만한 범행동기</u></li> <li>○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li> <li>○ 중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li> <li>○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중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범행</li> <li>○ 중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li> <li>○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li> <li>○ <u>참작할 만한 범행동기</u></li> <li>○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비난할 만한 범행동기</u></li> <li>○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li> <li>○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li> <li>○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구호 후송</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수정된 양형인자의 정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수정된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p>주요 참작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비난할 만한 범행동기</u></li> <li>○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li> <li>○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li> <li>○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협박·위계의 <u>정도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u>가 경미한 경우</li> <li>○ <u>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u></li> <li>○ <u>참작할 만한 범행동기</u></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p>일반 참작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피고인이 고령</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